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0. 17(포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8. 10. 21

다. 상정일자

⇒ 제4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08. 10. 2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흥운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1) 필요성이 낮은 기금의 폐지로 채무상환부담의 실효성 제고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의 다목에 의거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할 수 있어 동 운영조례의 존치목적 상실

2)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

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다) 그러나 「포천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송우택지개발지구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함) 전액을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과 맞지 않음.

나. 주요골자

1) 같은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노경만)

- 가.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성은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는 규정을 두고있고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공기업 관리자가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송우택지개발지구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함)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의 다목에 의거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채무상환에 활용 할 수 있고
- 다. 지방채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직접 상환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면 되는 사항으로 동 운영조례의 존치목적 을 상실 하였으며, 본 폐지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 폐지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